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

제4.1조 적용범위 및 목적

- 1. 이 장은, 양 당사국 각각의 국제적 의무 및 관세법에 따라,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 간 운송 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.
- 2.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 - 가.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를 이루게 한다.
 - 나. 양 당사국의 행정절차를 포함한 관세법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,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.
 - 다.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통관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장한다.
 - 라.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한다. 그리고
 - 마.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,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.

제4.2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관세법이란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하여 운영, 적용 또는 집행되는 법률을 의미한다.

통관절차란,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막한다.

특송화물이란, 상품의 신속한 국제 이동을 위하여,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행정에 책임이 있는,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의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.

운송수단이란 인 또는 상품을 운송하여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, 차량,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. 그리고

WCO란 세계관세기구(World Customs Organization)를 말한다.

제4.3조 투명성 및 문의처

- 1.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 및 관행이 예측가능하고, 일관되며 투명하고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.
- 2. 각 관세행정기관은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행정절차를 공표한다.
- 3.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, 그러한 문의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에 제공한다.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- 4.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규율하는 관세법 또는 절차의 중대한 수정에 대하여 다른쪽 관세행정기관에 시의적절한 통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.

제4.4조 원활화 및 조화

- 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절차 운영에 있어 상품 통관을 원활하게 한다.
- 2. 각 당사국의 통관절차는 가능한 경우,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을 포함한 세계관세기구 기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한다.
- 3.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,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롭게 하고, 무역 데이터 제출을 최소화하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4. 각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기관에 제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, 무역업자가 상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 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의 접촉선을 제공한다.

제4.5조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

1.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, 특히 종이 없는 무역의 맥락에서,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

정보기술을 적용한다.

- 2.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, 선적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,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.
- 3. 양 당사국은 상품이 단일한 시간과 장소에 양 당사국의 관세 영역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,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한 상품의 동시 검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.

제4.6조 위험관리

- 1. 통관 절차의 운영에서, 각 관세행정기관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, 반출을 포함한, 통관을 촉진한다. 관세행정기관은 제4.13조에 따라, 위험 관리에 관한 응용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.
- 2. 양 당사국의 국경 간 상품의 이동을 증진하기 위하여, 각 관세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검토한다.

제4.7조 상품의 반출

- 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- 2. 제1항에 따라,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 - 가.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, 가능한 한도에서, 도착 후 48 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는 절차
 - 나.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,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
 - 다.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 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, 그리고
 - 라. 적용가능한 관세,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, 그리고 그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, 수입자가 세관으 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

3.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4.8조 특송화물

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 이러한 절차는

- 가.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, 적용가능한 경우, WCO 탁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.
- 나.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 그 특송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전 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.
- 다.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, 특송화물 서비스에 의해 운송되는 선 적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서류의 제출을 허용한 다.
- 라. 가능한 한도에서,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.
- 마.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,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, 필요한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4시간 이내의 특송화물의 통관을 규정한다.
- 바. 중량 또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. 그리고
- 사.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, 미화 1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.¹

제4.9조 사전심사

1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²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.

¹ 이 호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은 제한 상품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수입자·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.

- 가. 품목분류
- 나.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, 그리고
- 다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
- 2.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를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 이는
 - 가.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상품의 상세한 설명과 사전심사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.
 - 나.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,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, 신청인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.
 - 다. 사전심사가 신청인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과 상황, 그리고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,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상품의 견품을 포함하여,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밖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규정한다. 그리고
 - 라.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된 경우, 사전심사서가 발급 관세행정기관의 자 국 언어로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규정한다.
- 3.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된 경우,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.
 - 가. 품목분류에 관하여, 40일 이내 또는 국내 법률에 명시한 그 보다 짧은 기 간 내에 발급한다. 또는
 - 나. 원산지에 관하여, 90일 이내에 발급한다.
- 4. 당사국은 제2항나호에 따라 요청한 추가 정보가 특정한 기간 이내에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- 5.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.
- 6. 제7항을 조건으로, 각 당사국은 그 심사일부터 3년 이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그 심사서에 기술된 상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한다.

- 7. 당사국은 다음의 결정이 있을 경우, 사전심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 - 가. 심사가 잘못된 사실이나 법에 기초하였던 경우
 - 나.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
 - 다. 이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상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, 또는
 - 라.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
- 8. 발급 당사국은,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- 9. 자국 국내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,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 결과 를, 인터넷상을 포함하여, 공표한다.
- 10. 수입자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가 사전심사 결과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,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의 사실 및 상황이 사전심사가기초하였던 사실 및 상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.

제4.10조 재심 및 불복청구

- 1. 각 당사국은 행정적 심사, 판정 또는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입자, 수출자 또는 그 밖의 인이 다음에 접근하도록 규정한다.
 - 가.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에 대한 행정적 재심의 단계, 그리고
 - 나.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적 결정의 사법적 재심
- 2.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.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3.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보는 청구인에게 제공되고 그러한 결정의 사유는 서면으로 제공된다.

제4.11조 관세 협력

- 1. 양 당사국은 관세 및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그들의 협력을 증진한다.
- 2.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고,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, 통관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.
- 3.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다.
 - 가. 특혜관세대우의 신청,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및 검증 절차를 포함 하여,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
 - 나. 실행가능한 한도에서, 수입 상품에 대하여 품목분류, 관세평가 및 특 혜관세대우를 위한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, 그리고
 - 다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

제4.12조 양자 관세협의

- 1. 제4.14조를 저해함이 없이,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 및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관세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.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, 제3항에 따라 설립된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.
- 2. 그러한 협의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.14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 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.
- 3. 각 관세행정기관은 이 장 및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,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. 양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.
- 4. 관세행정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운송수단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서 발생되는 모든 무역 원활화 사안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.
- 5. 이 조에 따른 협의는 제19장(분쟁해결) 또는 「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」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

제4.13조 비밀유지

- 1. 이 장 또는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목적상 수집되고 정보를 제 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,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인이나 당사국의 허가 없이는 원산지 결정 및 관세 사안의 운영 및 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.
-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장 또는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목적 상 수집된 정보는 이 장 또는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을 이행하는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작되는 행정적,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인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.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게는 그러한 사용 이전에 통보될 것이다.

제4.14조 관세 위원회

- 1. 양 당사국은 관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립하고, 이는 관세 사안 및 원산지 규정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.
- 2. 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.
- 3.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.
 - 가. 이 장 및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효과적이고, 통일되며, 일관된 운영 보장
 - 나.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중립적인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2-가(관세양허표) 및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의 유지
 - 다.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 고
 - 1) 이 장 및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해석, 적용 및 운영
 - 2)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
 - 3)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, 그리고

- 4)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, 이 장 또는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운영 관행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
- 라. 국제 표준에 따라, 양 당사국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
- 마. 품목분류를 포함하여, 이 장의 해석, 적용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분쟁 해결, 그리고
- 바. 부속서 2-가(관세 양허표)의 양 당사국의 양허표와 부속서 3-가(품목 별 원산지 규정)의 수정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제18.2조(공동위원회의 기능)에 따라 승인을 제안
- 4. 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.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,그 이후에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회합한다.
- 5. 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건전한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,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.

제4.15조 관세 평가

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「관세평가협정」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.

제4.16조 품목분류

양 당사국은 그들간 교역되는 상품에 1986년 6월24일 체결된 「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」을 적용한다.